

청주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4가단7008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4. 10. 31.

판 결 선 고 2024. 11. 14.

주 문

- 피고와 D(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24. 2. 1.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24. 3. 5. 접수 제239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D을 상대로 양수금 3,052,530원 및 그 중 1,498,22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청주지방법원 2023차전109865), 위 법원은 2023. 10. 18. 동일한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3. 11.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2024. 2. 1. 사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4. 3. 5. 피고 앞으로 2024. 2. 1. 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망인의 법적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자녀인 D, F, G이 있다.

마. D은 2024. 2.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특별한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D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D이 피고 및 F, G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D이 피고 및 F, G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9 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을 알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의 악의 추정 및 선의 항변

1)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이 D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이 D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승욱

별지